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21 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김예지·서미화·김상욱

정성국 • 고동진 • 이종배

박정하 • 박덕흠 • 송석준

최수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,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.1%에 불과함.

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3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인이나 개인이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・② (생	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법인이나 개인이 제10조의2
	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설을
	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「조
	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
	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령에
	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
	<u> 감면한다.</u>